|  |  |  |
| --- | --- | --- |
|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 **관리방법**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령 제152호<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 관리방법>이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의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국장2013년 1월 24일**제1장 총 칙****제1조**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를 보강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하 식품안전법이라 함)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 및 실시조례, <식품 등 제품의 안전 감독관리 보강에 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이하 특별규정이라 함), <유제품 안전 감독관리조례> 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제2조** 이 방법에서 유제품이라 함은 초유, 생우유 및 유제품을 가리킨다.이 방법에서 초유라 함은 젖소가 출산한 후 7일 내에 짠 젖을 가리킨다.이 제품에서 생우유라 함은 중국의 관련 요구에 부합되는 건강한 젖소 유방에서 짜낸, 그 어떠한 성분의 변화가 없는 젖을 가리킨다. 젖소 초유, 항생물질 사용기간과 약물 사용중지 기간의 유즙, 별진 젖은 생우유로 사용할 수 없다.이 방법에서 유제품이라 함은 젖을 주요원료로 가공하여 만든 식품으로서 이에는 저온 살균우유, 살균우유, 조제우유, 발효우유, 치즈 및 재생치즈, 희석크림, 크림, 무수(无水)크림, 연유, 분유, 유청분말, 유청단백질과 우유를 주성분으로 하는 영아와 유아 배합식품 등이 포함된다. 그중 생우유로 가공하였거나 가공 생산공정 중 열처리 살균 과정이 없는 제품은 생우유제품에 속한다.**제3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은 전국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업무를 관장한다.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역에 설치한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함)는 관할지역의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제4조** 수출입 유제품 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고 사회와 공중 앞에 책임을 짐으로써 식품안전, 신의성실을 보장해야 하며, 사회감독을 접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제2장 유제품의 수입****제5조** 국가질검총국은 중국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국에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나 지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상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며, 아울러 수입 유제품의 안전상황 및 감독관리의 필요에 따라 리뷰 심사를 실시한다.최초 중국에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나 지역은 그 정부주관부서에서 국가질검총국에 수의위생과 공공위생 법률 및 법규체계, 조직기구, 수의서비스체계, 안전위생컨트롤체계, 잔류모니터링체계, 동물 역병의 검측모니터링체계 및 중국에 수출할 제품의 종류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국가질검총국은 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당해 국가나 지역에 전문가팀을 파견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리스크평가를 거쳐 접수 가능한 범위 내의 경우 관련 증서와 증서 발급요구를 포함하는 상응하는 검사검역요구를 확정하고 요구에 부합되는 관련 유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다. 쌍방은 의정서를 체결하여 검사검역요구를 확정할 수 있다.**제6조** 국가질검총국은 대중국 수출 유제품의 경외 식품생산기업(이하 경외 생산기업이라 함)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실시하며, 등록업무는 국가질검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경외 생산기업은 수출국가나 지역의 정부주관부서의 비준을 받고 설립되어야 하며, 수출국가나 지역의 법률, 법규 관련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경외 생산기업은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과 관련 요구를 숙지하고 중국에 수출하는 유제품이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과 관련 요구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아울러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에서 규정한 항목의 검측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외 생산기업이 등록 신청 시에는 그가 중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유제품의 종류, 브랜드를 명시해야 한다.국가질검총국은 그 홈페이지에 등록을 거친 경외 생산기업을 공개한다.**제7조** 중국에 수출하는 유제품은 수출국가나 지역의 정부주관부서에서 발급한 위생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증서는 다음의 내용을 증명해야 한다. (1) 유제품 원료가 건강한 동물에서 왔을 것(2) 유제품의 가공처리가 동물 역병을 초래하지 않을 것(3) 유제품 생산기업이 해당지역 정부주관부서의 감독관리를 받고 있을 것(4) 유제품은 안전하고 인류 식용에 제공 가능할 것.증서에는 수출국가 또는 지역의 정부주관부서의 직인과 그 수권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목적지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명시되어야 한다.증서샘플은 국가질검총국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아울러 국가질검총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제8조** 검역 심사비준 수속이 필요한 수입 유제품은 <중화인민공화국 입국 동식물검역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수입이 가능하다.국가질검총국은 법에 의해 검역 심사비준을 실시하는 유제품의 종류를 조정 및 공포할 수 있다.**제9조** 중국 경내에 유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상이나 대리상은 국가질검총국에 비안(備案)을 해야 한다. 비안을 신청한 수출상이나 대리상은 비안요구에 따라 비안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아울러 그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비안명단은 국가질검총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제10조** 검사검역기구는 유제품 수입상에 대해 비안관리를 실시한다. 수입상은 식품안전 전문기술인원, 관리인원 및 식품안전보장 규장제도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국가질검총국의 규정에 따라 그 공상등록등기지역의 관할 검사검역기구에 비안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제11조** 유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이나 대리인은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고 해관 통관지역의 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1) 계약, 인보이스, 선적명세서, 선하증권 등 필요한 증빙서류(2) 이 방법 제7조 규정에 부합되는 위생증서(3) 최초 수입하는 유제품은 상응하는 식품안전 국가표준 중에 열거한 항목의 검측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 수입이란 경외 생산기업, 제품명칭, 배합방법, 경외 수출상, 경내 수입상 등 정보가 완전히 같은 유제품을 동일 출입항에서 처음 수입하는 것을 가리킨다.(4) 최초 수입이 아닌 유제품은 최초 수입검측보고서의 복사본과 국가질검총국 요구항목의 검측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 수입이 아닌 검측보고서 항목은 국가질검총국에서 유제품의 리스크모니터링 등 관련 상황에 따라 확정함과 아울러 국가질검총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5) 수입 유제품의 안전위생항목(병균, 진균독소, 오염물, 중금속, 불법첨가물 포함)이 불합격이어 다시 수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식품안전 국가표준 중에 열거한 항목의 검측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속 5회 안전위생항목 불합격 상황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다시 수입할 때에는 상응하는 식품안전 국가표준 중에 열거한 항목의 검측보고서 복사본과 국가질검총국 요구항목의 검측보고서만 제출한다.(6) 포장 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문 라벨샘플, 원문 라벨 중문번역문, 중문 라벨샘플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7) 검역 심사비준이 필요한 유제품의 수입은 입국 동식물검역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8) 아직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유제품의 수입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발급한 허가 증명문건을 제출해야 한다.(9) 보건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유관부서에서 발급한 허가 증명문건을 제출해야 한다.(10) 포상, 영예, 인증마크 등 내용을 표기한 경우에는 외교루트를 거쳐 확인된 관련 증명문건을 제출해야 한다.**제12조** 유제품 수입상은 그가 수입하는 유제품이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아울러 그 수입유제품의 종류, 원산지, 브랜드를 공포해야 한다.아직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발급한 허가 증명문건 중의 관련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제13조** 수입 유제품의 포장과 운송수단은 안전위생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제14조** 포장 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문라벨, 중문설명서가 있어야 하며, 라벨, 설명서는 중국의 관련 법률과 법규 규정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제15조** 수입 유제품은 입국화물 검사검역증명서를 취득하기 전에 검사검역기구가 지정하거나 인가한 감독관리 장소에 보관시켜야 하며, 검사검역기구의 허락이 없이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제멋대로 이동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제16조** 검사검역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수입 유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입 유제품이 동식물 전염병, 역병 전파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검역법>의 규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제17조** 수입 유제품은 검사검역에 합격되고 검사검역기구에서 입국화물 검사검역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야 판매, 사용이 가능하다.수입 유제품의 입국화물 검사검역증명서 중에는 제품명칭, 브랜드, 수출국가나 지역, 사이즈, 물량/중량, 생산일시 및 일련번호, 품질보증기간 등 정보가 명기되어야 한다. **제18조** 수입 유제품이 검사검역에 불합격인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불합격 증명서를 발급한다. 안전, 건강, 환경보호 관련 항목이 불합격인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당사자에게 명하여 폐기처분을 하게 하거나 또는 반품처리통지서를 발급하여 수입상이 반품 수속을 하도록 한다. 기타 항목이 불합격인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구의 감독하에서 기술적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재검사에 합격된 후에야 판매, 사용이 가능하다.수입 유제품을 폐기처분이나 반품 전에 유제품 수입상은 스스로 불합격 유제품을 봉인하여 검사검역기구에서 지정하거나 인가한 장소에 단독으로 보관시켜야 하며, 검사검역기구의 허락이 없이는 제멋대로 움직일 수 없다.수입상은 3개월 내에 폐기처분을 하고 폐기처분 상황을 검사검역기구에 보고해야 한다.**제19조** 유제품 수입상은 유제품 수입 및 판매기록 제도를 구축하여 수입 유제품의 입국화물 검사검역증명서 번호, 명칭, 사이즈, 물량, 생산일시 또는 일련번호, 품질보증기간, 수출상과 구매자의 명칭과 연락방식, 인도일자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기록은 진실해야 하며, 기록 보관기간은 최저 2년으로 한다.검사검역기구는 본 관할구 내 수입상의 수입과 판매기록에 해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제20조** 수입 유제품원료를 전부 가공에 사용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수출목적 국가 또는 지역의 표준이나 계약의 요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발급한 입국화물 검사검역증명서에 "수출가공에만 사용가능"이라고 밝힌다.**제21조** 검사검역기구는 유제품 수입상 신용기록을 구축해야 한다.검사검역기구에서 법정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수입 유제품을 발견한 경우는 법정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수입 유제품의 수입상, 검사신고인, 대리인을 블랙리스트에 넣을 수 있다. 불법행위가 있어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불법기업명단에 넣어 대외에 공포할 수 있다.**제3장 유제품의 수출****제22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 유제품 생산기업 비안제도를 실시하며, 비안업무는 국가질검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비안수속을 처리한 수출 유제품 생산기업만 유제품 수출이 가능하다.**제23조** 생우유를 수출하는 젖소양식장은 검사검역기구에 비안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는 리스크분석을 실시한 토대에서 비안양식장에 대해 동식물 역병, 농축잔류물, 환경오염물 및 기타 유독유해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제24조** 생우유를 수출하는 젖소양식장은 젖소양식 보관서류를 철하여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1) 젖소의 품종, 수량, 번식기록, 표지상황, 출처 및 양식장 출입일시(2) 사료, 사료첨가제, 축약 등 투입물의 출처, 명칭, 사용대상, 시간 및 용량(3) 검역, 면역, 소독상황(4) 젖소 발병, 사망 및 불합격 생우유의 처리상황(5) 생우유 생산, 저장보관, 검사, 판매 상황.기록은 진실해야 하며, 보존기간은 최저 2년으로 한다.**제25조** 생우유 수출 양식장은 중국 및 수입 국가나 지역에서 금지하는 사료, 사료첨가제, 축약 및 기타의 동물과 인체에 직접적으로나 잠재적 위해가 있는 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규정한 약물 사용기간과 사용중지기간 내의 젖소의 젖 수출을 금지한다. **제26조** 생우유 수출 생산기업은 양호한 생산규범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해분석과 관건 컨트롤체계(HACCP)를 구축 및 실시함으로써 체계의 효율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제27조** 유제품 수출 생산기업은 아래의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1) 원료,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의 입하 검증제도. 명칭, 사이즈, 물량, 납품자 명칭 및 연락방식, 입하일시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2) 생산기록 제도. 식품 생산과정의 안전관리 상황을 여실하게 기록한다.(3) 출하검사 제도. 출하 유제품에 대한 일련번호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보고서를 보관하여 샘플을 남겨야 한다.(4) 유제품 출하 검사기록 제도 및 출하 유제품 검사합격증서와 품질 안전상황 검사. 제품의 명칭, 사이즈, 물량, 생산일자, 품질보증기간, 생산 일련번호, 검사 합격증서 번호, 구매자 명칭 및 연락방식, 판매일자 등을 여실히 기록한다.상술한 기록은 진실해야 하며, 보존기간은 최저 2년으로 한다.**제28조** 수출 유제품 생산기업은 수출 유제품 가공에 사용한 원부자재 및 완성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거나 자격을 갖춘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아울러 검사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제29조** 수출 유제품의 포장과 운송방식은 안전위생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변질하기 쉽거나 냉동 또는 냉장이 필요한 유제품을 선적 수출하는 컨테이너, 선창, 비행기, 차량 등 운송적재수단, 운송업자, 선적단위 또는 그 대리인은 규정에 따라 운송수단과 적재용기를 세척, 소독하고 기록을 해야 하며, 선적 운송 전에 검사검역기구에 청정, 위생, 냉장, 밀봉고정 등 적재적합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선적 운송할 수 없다.**제30조** 유제품 수출상 또는 그 대리인은 국가질검총국의 검사신고규정에 따라 유제품 수출 생산기업 소재지의 검사검역기구에 검사 신고를 해야 한다.**제31조** 검사검역기구는 수출 유제품의 리스크상황, 생산기업의 안전위생 품질관리 수준, 제품 안전위생 품질기록, 기왕 수출상황, 수출국가 또는 지역요구 등에 근거하여 수출 유제품 표본검사 방안을 제정하고 아래의 요구에 따라 수출 유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1) 쌍무협정, 의정서, 양해각서에서 확정한 검사검역요구(2) 수입국가 또는 지역의 표준(3) 무역계약 또는 신용장에 명기한 검사검역요구.상술한 표준과 요구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국가 법률, 법규 및 관련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유제품 수출 생산기업, 수출상은 그가 수출하는 유제품이 상술한 요구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제32조** 수출 유제품이 검사검역을 거쳐 관련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출국화물 통관신고서> 또는 <출국화물 증서교체 증빙서류>를 발급하고 검사검역증을 발급하며, 검사검역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국화물 불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 수출을 금지한다.**제33조** 수출 유제품의 출입항 검사검역기구는 출국화물 증서교체 검사 관련 규정에 따라 화물과 증서 부합여부를 검사한다. 검사에 합격된 경우 원산지 검사검역기구에서 발급한 <출국화물 증서교체 증빙서류>에 의거하여 <출국화물 통관신고서>를 교체 발급하며, 검사에 불합격인 경우 출입항 검사검역기구는 불합격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출을 금지한다.원산지 검사검역기구와 출입항 검사검역기구는 정보교류메커니즘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검사검역 과중 중에서 발견한 수출 유제품의 위생안전문제를 통보하고 아울러 규정에 따라 상급에 보고해야 한다.**제34조** 수출 유제품 생산경영자는 제품 소급제도를 구축하여 관련 기록을 남김으로써 소급의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기록 보존기간은 최저 2년으로 한다.**제35조** 수출 유제품 생산기업은 샘플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샘플 보관조건, 시간은 제품 자체의 특성에 부합되고 수량과 물량은 검사 요구을 충족시켜야 한다.**제36조** 검사검역기구가 법정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수출 유제품을 발견한 경우 그 생산경영자를 블랙리스트에 넣을 수 있으며, 불법행위가 있어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불법기업명단에 넣어 대외에 공포할 수 있다.**제4장 리스크 경보****제37조** 국가질검총국과 검사검역기구는 스스로의 모니터링, 법 집행 감독관리, 실험실 검사, 해외통보, 국내기구나 조직 통보, 매체의 인터넷보도, 제소고발 및 유관부서의 이관 처리 등 유제품 안전정보를 수집, 정리해야 한다.**제38조** 수출입 유제품 생산경영자는 리스크정보 보고제도를 구축하여 유제품 안전리스크정보 응급방안을 제정함과 아울러 응급 연락원을 배치해야 한다. 전문직 리스크정보 보고요원을 배치하여 발견한 수출입 유제품의 리콜과 처리 상황 등 리스크정보를 지체 없이 검사검역기구에 보고해야 한다.**제39조** 검사검역기구는 심사인가, 정리를 거친 수출입 유제품의 안전정보에 대한 초보적인 처리의견을 제출함과 아울러 규정한 요구와 절차에 따라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하고 지방정부, 유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제40조** 국가질검총국과 직속 검사검역국은 수출입 유제품 안전리스크정보의 등급에 따라 리스크경보를 발표해야 한다. 국가질검총국은 상황에 비추어 리스크경보를 발표하고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엄밀한 모니터링, 엄격한 검사, 리콜 명령 등을 포함한 조건부 수출입 제한(2) 수출입을 금지하고 현지에서 폐기처분하거나 반품 운송처리(3) 수출입 유제품 안전응급처분 예비대책 가동.검사검역기구는 리스크경보 및 통제조치 관리와 실시를 주관한다.**제41조** 중국에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나 지역에서 유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동물 역병이나 기타 중대한 식품안전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가질검총국은 중국 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 유제품에 대해 이 방법 제40조에서 규정한 리스크경보 및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국가질검총국은 전염병 상태의 변화, 식품안전 사건처리 상황, 수출국가나 지역 정부 주관부서 및 유제품 생산기업에서 제공한 관련 자료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리스크경보 및 통제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제42조** 수출입 유제품 안전리스크가 존재하지 않거나 접수 가능한 정도로 내려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리스크경보와 리스크경보 및 통제조치를 해제해야 한다.**제43조** 수입 유제품에 안전문제가 존재하여 이미 또는 바야흐로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경우 유제품 수입상은 스스로 리콜을 실시하고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유제품 수입상은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도매, 판매자에게 도매, 판매를 중지하도록 통지하고 소비자들이 사용을 중지하도록 고지해야 하며, 유제품 리콜상황 기록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검사검역기구는 보고를 받은 후 심사확인을 실시해야 하며, 수입 유제품의 영향범위에 근거하여 규정에 따라 상급에 보고한다.유제품 수입상이 스스로 리콜을 하지 않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그에게 리콜통지서를 발송함과 아울러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한다. 필요 시 국가질검총국은 리콜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국가질검총국은 리스크경보 경보나 리스크경보 통고를 반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 방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조치와 기타 위해발생 피면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44조** 수출 유제품 안전문제가 이미 또는 바야흐로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을 손상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유제품 수출 생산경영자는 조치를 취하여 손해 발생을 피변하거나 감소해야 하며, 아울러 지체 없이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보고해야 한다.**제45조** 검사검역기구는 법에 따라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할 때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생산경영 장소에 진입하여 현장 검사 실시(2) 관련 계약, 어음, 장부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열람, 복제, 봉인, 압류(3) 법정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 불법사용한 원자재, 보조재, 첨가제, 농업투입물 및 불법 생산에 사용한 수단, 설비를 봉인, 차압(4)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해하는 중대 화근이 존재하는 생산경영 장소를 차압.**제46조** 검사검역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취한 통제조치 상황을 국가질검통국에 보고함과 아울러 지방정부, 유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국가질검총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입 유제품 안전정보와 취한 통제조치 관련 상황을 유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제5장 법률적 책임****제47조** 수입 유제품이 검사검역을 거쳐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판매, 사용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식품안전법 제85조,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소득, 불법 생산경영 유제품과 불법 생산경영에 사용한 수단,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하며, 불법 생산경영 유제품 화물가치가 1만 미만인 경우 2,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화물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가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는 허가증을 말소한다.**제48조** 유제품 수입상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식품안전법 제87조,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비안을 말소한다.(1) 유제품 수입, 판매기록 제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2) 수입, 판매기록 제도가 불건전하거나 진실하지 않은 경우(3) 수입, 판매기록 보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4) 기록을 개찬, 훼손, 멸실하거나 또는 기타의 상황으로 인해 진실한 상황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5) 수입, 판매기록을 위조, 변조한 경우.**제49조** 유제품 수입상이 이 방법 제48조에 열거한 상황 그 밖에 기타 허위날조 행위가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특별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소득과 유제품을 몰수함과 아울러 화물가치 3배의 벌금을 병과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제50조** 유제품 수출상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어 식품안전법 규정을 어기고 유제품을 수출한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식품안전법 제85조,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소득, 불법 생산 경영한 유제품과 불법 생산경영에 사용한 수단, 설비, 원자재 등 물품을 몰수하며, 불법 생산 경영한 유제품 가치가 1만 미만인 경우 2,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화물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화물가치 5배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수출 유제품 생산기업 비안을 취소한다.(1) 검사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감독, 검사 합격을 거치지 않고 제멋대로 수출한 경우(2) 수출 유제품이 검사에 불합격이나 제멋대로 수출한 경우(3)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표본검사를 거침과 아울러 이미 검사검역증명서를 발급한 수출 유제품을 제멋대로 교체한 경우(4) 수출 유제품이 검사검역기구 비안을 거치지 않은 유제품 생산기업에서 온 경우.**제51조** 수출 유제품 생산경영자가 이 방법 제50조에 열거한 상황 그 밖에 기타 허위날조 행위가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특별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소득과 유제품을 몰수함과 아울러 화물가치 3배의 벌금을 병과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제52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최고 3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1) 유제품 수입상이 규정한 기한 내에 검사검역기구의 요구에 따라 불합격 유제품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2) 유제품 수입상이 이 방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수입 불합격 유제품을 폐기처분하거나 반품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봉인 및 단독 보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유제품 수입상이 수입 불합격 유제품을 제멋대로 검사검역기구에서 지정하였거나 인가한 장소에서 이동한 경우(4) 생우유를 수출하는 젖소 양식장이 젖소 양식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농업화학 투입물을 사용한 경우(5) 생우유를 수출하는 젖소 양식장 관련 기록이 진실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6) 수출 유제품 생산경영자가 소급제도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소급제도의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7) 수출 유제품 생산기업이 샘플관리 제도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보존한 샘플이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8) 수출 유제품 생산경영자가 이 방법의 포장 및 운송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제53조** 수출입 유제품 생산경영자, 검사검역기구 및 그 업무직원이 기타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류, 법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제6장 부 칙****제54조** 수출입 유제품 수출입상이 검사검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입상품 재검사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55조** 사료용 유제품, 기타 비식용 유제품 및 속달, 우편물 또는 여객의 휴대 출입국 유제품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제56조** 이 방법은 국가질검총국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제57조** 이 방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进出口乳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令第152号《进出口乳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已经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3年5月1日起施行。 局 长 2013年1月24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加强进出口乳品检验检疫监督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以下简称食品安全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及其实施条例、《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以下简称特别规定) 、《乳品质量安全监督管理条例》等法律法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乳品包括初乳、生乳和乳制品。 本办法所称初乳是指奶畜产犊后7天内的乳。 本办法所称生乳是指从符合中国有关要求的健康奶畜乳房中挤出的无任何成分改变的常乳。奶畜初乳、应用抗生素期间和休药期间的乳汁、变质乳不得用作生乳。 本办法所称乳制品是指由乳为主要原料加工而成的食品，如：巴氏杀菌乳、灭菌乳、调制乳、发酵乳、干酪及再制干酪、稀奶油、奶油、无水奶油、炼乳、乳粉、乳清粉、乳清蛋白粉和乳基婴幼儿配方食品等。其中，由生乳加工而成、加工工艺中无热处理杀菌过程的产品为生乳制品。 **第三条**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以下简称国家质检总局）主管全国进出口乳品检验检疫监督管理工作。 国家质检总局设在各地的出入境检验检疫机构（以下简称检验检疫机构）负责所辖地区进出口乳品检验检疫监督管理工作。 **第四条** 进出口乳品生产经营者应当依法从事生产经营活动，对社会和公众负责，保证食品安全，诚实守信，接受社会监督，承担社会责任。**第二章 乳品进口** **第五条** 国家质检总局依据中国法律法规规定对向中国出口乳品的国家或者地区的食品安全管理体系和食品安全状况进行评估，并根据进口乳品安全状况及监督管理需要进行回顾性审查。 首次向中国出口乳品的国家或者地区，其政府主管部门应当向国家质检总局提供兽医卫生和公共卫生的法律法规体系、组织机构、兽医服务体系、安全卫生控制体系、残留监控体系、动物疫病的检测监控体系及拟对中国出口的产品种类等资料。 国家质检总局依法组织评估，必要时，可以派专家组到该国家或者地区进行现场调查。经评估风险在可接受范围内的，确定相应的检验检疫要求，包括相关证书和出证要求，允许其符合要求的相关乳品向中国出口。双方可以签署议定书确认检验检疫要求。 **第六条** 国家质检总局对向中国出口乳品的境外食品生产企业（以下简称境外生产企业）实施注册制度，注册工作按照国家质检总局相关规定执行。 境外生产企业应当经出口国家或者地区政府主管部门批准设立，符合出口国家或者地区法律法规相关要求。 境外生产企业应当熟悉并保证其向中国出口的乳品符合中国食品安全国家标准和相关要求，并能够提供中国食品安全国家标准规定项目的检测报告。境外生产企业申请注册时应当明确其拟向中国出口的乳品种类、品牌。 获得注册的境外生产企业应当在国家质检总局网站公布。 **第七条** 向中国出口的乳品，应当附有出口国家或者地区政府主管部门出具的卫生证书。证书应当证明下列内容： （一）乳品原料来自健康动物； （二）乳品经过加工处理不会传带动物疫病； （三）乳品生产企业处于当地政府主管部门的监管之下； （四）乳品是安全的，可供人类食用。 证书应当有出口国家或者地区政府主管部门印章和其授权人签字，目的地应当标明为中华人民共和国。 证书样本应当经国家质检总局确认，并在国家质检总局网站公布。 **第八条** 需要办理检疫审批手续的进口乳品，应当在取得《中华人民共和国进境动植物检疫许可证》后，方可进口。 国家质检总局可以依法调整并公布实施检疫审批的乳品种类。 **第九条** 向中国境内出口乳品的出口商或者代理商应当向国家质检总局备案。申请备案的出口商或者代理商应当按照备案要求提供备案信息，对信息的真实性负责。 备案名单应当在国家质检总局网站公布。 **第十条** 检验检疫机构对进口乳品的进口商实施备案管理。进口商应当有食品安全专业技术人员、管理人员和保证食品安全的规章制度，并按照国家质检总局规定，向其工商注册登记地检验检疫机构申请备案。 **第十一条** 进口乳品的进口商或者其代理人，应当持下列材料向海关报关地的检验检疫机构报检： （一）合同、发票、装箱单、提单等必要凭证。 （二）符合本办法第七条规定的卫生证书。 （三）首次进口的乳品，应当提供相应食品安全国家标准中列明项目的检测报告。首次进口，指境外生产企业、产品名称、配方、境外出口商、境内进口商等信息完全相同的乳品从同一口岸第一次进口。 （四）非首次进口的乳品，应当提供首次进口检测报告的复印件以及国家质检总局要求项目的检测报告。非首次进口检测报告项目由国家质检总局根据乳品风险监测等有关情况确定并在国家质检总局网站公布。 （五）进口乳品安全卫生项目（包括致病菌、真菌毒素、污染物、重金属、非法添加物）不合格，再次进口时，应当提供相应食品安全国家标准中列明项目的检测报告；连续5批次未发现安全卫生项目不合格，再次进口时提供相应食品安全国家标准中列明项目的检测报告复印件和国家质检总局要求项目的检测报告。 （六）进口预包装乳品的，应当提供原文标签样张、原文标签中文翻译件、中文标签样张等资料。 （七）进口需要检疫审批的乳品，应当提供进境动植检疫许可证。 （八）进口尚无食品安全国家标准的乳品，应当提供国务院卫生行政部门出具的许可证明文件。 （九）涉及有保健功能的，应当提供有关部门出具的许可证明文件。 （十）标注获得奖项、荣誉、认证标志等内容的，应当提供经外交途径确认的有关证明文件。 **第十二条** 进口乳品的进口商应当保证其进口乳品符合中国食品安全国家标准，并公布其进口乳品的种类、产地、品牌。 进口尚无食品安全国家标准的乳品，应当符合国务院卫生行政部门出具的许可证明文件中的相关要求。 **第十三条** 进口乳品的包装和运输工具应当符合安全卫生要求。 **第十四条** 进口预包装乳品应当有中文标签、中文说明书，标签、说明书应当符合中国有关法律法规规定和食品安全国家标准。 **第十五条** 进口乳品在取得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前，应当存放在检验检疫机构指定或者认可的监管场所，未经检验检疫机构许可，任何单位和个人不得擅自动用。 **第十六条** 检验检疫机构应当按照《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规定的方式对进口乳品实施检验；进口乳品存在动植物疫情疫病传播风险的，应当按照《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规定实施检疫。 **第十七条** 进口乳品经检验检疫合格，由检验检疫机构出具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后，方可销售、使用。 进口乳品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中应当列明产品名称、品牌、出口国家或者地区、规格、数/重量、生产日期或者批号、保质期等信息。 **第十八条** 进口乳品经检验检疫不合格的，由检验检疫机构出具不合格证明。涉及安全、健康、环境保护项目不合格的，检验检疫机构责令当事人销毁，或者出具退货处理通知单，由进口商办理退运手续。其他项目不合格的，可以在检验检疫机构监督下进行技术处理，经重新检验合格后，方可销售、使用。 进口乳品销毁或者退运前，进口乳品进口商应当将不合格乳品自行封存，单独存放于检验检疫机构指定或者认可的场所，未经检验检疫机构许可，不得擅自调离。 进口商应当在3个月内完成销毁，并将销毁情况向检验检疫机构报告。 **第十九条** 进口乳品的进口商应当建立乳品进口和销售记录制度，如实记录进口乳品的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编号、名称、规格、数量、生产日期或者批号、保质期、出口商和购货者名称及联系方式、交货日期等内容。记录应当真实，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2年。 检验检疫机构应当对本辖区内进口商的进口和销售记录进行检查。 **第二十条** 进口乳品原料全部用于加工后复出口的，检验检疫机构可以按照出口目的国家或者地区的标准或者合同要求实施检验，并在出具的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上注明“仅供出口加工使用”。 **第二十一条** 检验检疫机构应当建立进口乳品进口商信誉记录。 检验检疫机构发现不符合法定要求的进口乳品时，可以将不符合法定要求的进口乳品进口商、报检人、代理人列入不良记录名单；对有违法行为并受到处罚的，可以将其列入违法企业名单并对外公布。**第三章 乳品出口** **第二十二条** 国家质检总局对出口乳品生产企业实施备案制度，备案工作按照国家质检总局相关规定执行。 出口乳品应当来自备案的出口乳品生产企业。 **第二十三条** 出口生乳的奶畜养殖场应当向检验检疫机构备案。检验检疫机构在风险分析的基础上对备案养殖场进行动物疫病、农兽药残留、环境污染物及其他有毒有害物质的监测。 **第二十四条** 出口生乳奶畜养殖场应当建立奶畜养殖档案，载明以下内容： （一）奶畜的品种、数量、繁殖记录、标识情况、来源和进出场日期； （二）饲料、饲料添加剂、兽药等投入品的来源、名称、使用对象、时间和用量； （三）检疫、免疫、消毒情况； （四）奶畜发病、死亡和不合格生乳的处理情况； （五）生乳生产、贮存、检验、销售情况。 记录应当真实，保存期限不得少于2年。 **第二十五条** 出口生乳奶畜养殖不得使用中国及进口国家或者地区禁用的饲料、饲料添加剂、兽药以及其他对动物和人体具有直接或者潜在危害的物质。禁止出口奶畜在规定用药期和休药期内产的乳。 **第二十六条** 出口乳品生产企业应当符合良好生产规范要求，建立并实施危害分析与关键控制点体系（HACCP），并保证体系有效运行。 **第二十七条** 出口乳制品生产企业应当建立下列制度： （一）原料、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进货查验制度，如实记录其名称、规格、数量、供货者名称及联系方式、进货日期等； （二）生产记录制度，如实记录食品生产过程的安全管理情况； （三）出厂检验制度，对出厂的乳品逐批检验，并保存检验报告，留取样品； （四）乳品出厂检验记录制度，查验出厂乳品检验合格证和质量安全状况，如实记录产品的名称、规格、数量、生产日期、保质期、生产批号、检验合格证号、购货者名称及联系方式、销售日期等。 上述记录应当真实，保存期不得少于2年。 **第二十八条** 出口乳品生产企业应当对出口乳品加工用原辅料及成品进行检验或者委托有资质的检验机构检验，并出具检验报告。 **第二十九条** 出口乳品的包装和运输方式应当符合安全卫生要求。 对装运出口易变质、需要冷冻或者冷藏乳品的集装箱、船舱、飞机、车辆等运载工具，承运人、装箱单位或者其代理人应当按照规定对运输工具和装载容器进行清洗消毒并做好记录，在装运前向检验检疫机构申请清洁、卫生、冷藏、密固等适载检验；未经检验或者经检验不合格的，不准装运。 **第三十条** 出口乳品的出口商或者其代理人应当按照国家质检总局的报检规定，向出口乳品生产企业所在地检验检疫机构报检。 **第三十一条** 检验检疫机构根据出口乳品的风险状况、生产企业的安全卫生质量管理水平、产品安全卫生质量记录、既往出口情况、进口国家或者地区要求等，制定出口乳品抽检方案，按照下列要求对出口乳品实施检验： （一）双边协议、议定书、备忘录确定的检验检疫要求; （二）进口国家或者地区的标准; （三）贸易合同或者信用证注明的检验检疫要求。 均无上述标准或者要求的，按照中国法律法规及相关食品安全国家标准规定实施检验。 出口乳品的生产企业、出口商应当保证其出口乳品符合上述要求。 **第三十二条** 出口乳品经检验检疫符合相关要求的，检验检疫机构出具《出境货物通关单》或者《出境货物换证凭单》，并出具检验检疫证书；经检验检疫不合格的，出具《出境货物不合格通知单》，不得出口。 **第三十三条** 出口乳品出境口岸检验检疫机构按照出境货物换证查验的相关规定，检查货证是否相符。查验合格的，凭产地检验检疫机构出具的《出境货物换证凭单》换发《出境货物通关单》；查验不合格的，由口岸检验检疫机构出具不合格证明，不准出口。 产地检验检疫机构与口岸检验检疫机构应当建立信息交流机制，及时通报出口乳品在检验检疫过程中发现的卫生安全问题，并按照规定上报。 **第三十四条** 出口乳品生产经营者应当建立产品追溯制度，建立相关记录，保证追溯有效性。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2年。 **第三十五条** 出口乳品生产企业应当建立样品管理制度，样品保管的条件、时间应当适合产品本身的特性，数重量应当满足检验要求。 **第三十六条** 检验检疫机构发现不符合法定要求的出口乳品时，可以将其生产经营者列入不良记录名单；对有违法行为并受到处罚的，可以将其列入违法企业名单并对外公布。**第四章 风险预警** **第三十七条** 国家质检总局和检验检疫机构应当收集和整理主动监测、执法监管、实验室检验、境外通报、国内机构组织通报、媒体网络报道、投诉举报以及相关部门转办等乳品安全信息。 **第三十八条** 进出口乳品生产经营者应当建立风险信息报告制度，制定乳品安全风险信息应急方案，并配备应急联络员；设立专职的风险信息报告员，对已发现的进出口乳品召回和处理情况等风险信息及时报告检验检疫机构。 **第三十九条** 检验检疫机构应当对经核准、整理的进出口乳品安全信息提出初步处理意见，并按照规定的要求和程序向国家质检总局报告，向地方政府、有关部门通报。 **第四十条** 国家质检总局和直属检验检疫局应当根据进出口乳品安全风险信息的级别发布风险预警通报。国家质检总局视情况可以发布风险预警通告，并决定采取以下措施： （一）有条件地限制进出口，包括严密监控、加严检验、责令召回等； （二）禁止进出口，就地销毁或者作退运处理； （三）启动进出口乳品安全应急处置预案。 检验检疫机构负责组织实施风险预警及控制措施。 **第四十一条** 向中国出口乳品的国家或者地区发生可能影响乳品安全的动物疫病或者其他重大食品安全事件时，国家质检总局可以根据中国法律法规规定，对进口乳品采取本办法第四十条规定的风险预警及控制措施。 国家质检总局可以依据疫情变化、食品安全事件处置情况、出口国家或者地区政府主管部门和乳品生产企业提供的相关资料，经评估后调整风险预警及控制措施。 **第四十二条** 进出口乳品安全风险已不存在或者已降低到可接受的程度时，应当及时解除风险预警通报和风险预警通告及控制措施。 **第四十三条** 进口乳品存在安全问题，已经或者可能对人体健康和生命安全造成损害的，进口乳品进口商应当主动召回并向所在地检验检疫机构报告。进口乳品进口商应当向社会公布有关信息，通知批发、销售者停止批发、销售，告知消费者停止使用，做好召回乳品情况记录。 检验检疫机构接到报告后应当进行核查，根据进口乳品影响范围按照规定上报。 进口乳品进口商不主动实施召回的，由直属检验检疫局向其发出责令召回通知书并报告国家质检总局。必要时，国家质检总局可以责令召回。国家质检总局可以发布风险预警通报或者风险预警通告，并采取本办法第四十条规定的措施以及其他避免危害发生的措施。 **第四十四条** 发现出口的乳品存在安全问题，已经或者可能对人体健康和生命安全造成损害的，出口乳品生产经营者应当采取措施，避免和减少损害的发生，并立即向所在地检验检疫机构报告。 **第四十五条** 检验检疫机构在依法履行进出口乳品检验检疫监督管理职责时有权采取下列措施： （一）进入生产经营场所实施现场检查； （二）查阅、复制、查封、扣押有关合同、票据、账簿以及其他有关资料； （三）查封、扣押不符合法定要求的产品，违法使用的原料、辅料、添加剂、农业投入品以及用于违法生产的工具、设备； （四）查封存在危害人体健康和生命安全重大隐患的生产经营场所。 **第四十六条** 检验检疫机构应当按照有关规定将采取的控制措施向国家质检总局报告并向地方政府、有关部门通报。 国家质检总局按照有关规定将相关进出口乳品安全信息及采取的控制措施向有关部门通报。**第五章 法律责任** **第四十七条** 进口乳品经检验检疫不符合食品安全国家标准，擅自销售、使用的，由检验检疫机构按照食品安全法第八十五条、第八十九条的规定，没收违法所得、违法生产经营的乳品和用于违法生产经营的工具、设备、原料等物品；违法生产经营的乳品货值金额不足1万元的，并处2000元以上5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5倍以上10倍以下罚款；情节严重的，吊销许可证。 **第四十八条** 进口乳品进口商有下列情形之一，由检验检疫机构依照食品安全法第八十七条、第八十九条的规定，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取消备案： （一）未建立乳品进口、销售记录制度的； （二）进口、销售记录制度不全面、不真实的； （三）进口、销售记录保存期限不足2年的； （四）记录发生涂改、损毁、灭失或者有其他情形无法反映真实情况的； （五）伪造、变造进口、销售记录的。 **第四十九条** 进口乳品进口商有本办法第四十八条所列情形以外，其他弄虚作假行为的，由检验检疫机构按照特别规定第八条规定，没收违法所得和乳品，并处货值金额3倍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五十条** 出口乳品出口商有下列情形之一，未遵守食品安全法规定出口乳品的，由检验检疫机构按照食品安全法第八十五条、第八十九条的规定，没收违法所得、违法生产经营的乳品和用于违法生产经营的工具、设备、原料等物品；违法生产经营的乳品货值金额不足1万元的，并处2000元以上5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5倍以上10倍以下罚款；情节严重的，取消出口乳品生产企业备案： （一）未报检或者未经监督、检验合格擅自出口的； （二）出口乳品经检验不合格，擅自出口的； （三）擅自调换经检验检疫机构监督、抽检并已出具检验检疫证明的出口乳品的； （四）出口乳品来自未经检验检疫机构备案的出口乳品生产企业的。 **第五十一条** 出口乳品生产经营者有本办法第五十条所列情形以外，其他弄虚作假行为的，由检验检疫机构按照特别规定第七条规定，没收违法所得和乳品，并处货值金额3倍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五十二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由检验检疫机构责令改正，有违法所得的，处以违法所得3倍以下罚款，最高不超过3万元；没有违法所得的，处1万元以下罚款。 （一）进口乳品进口商未在规定的期限内按照检验检疫机构要求处置不合格乳品的； （二）进口乳品进口商违反本办法第十八条规定，在不合格进口乳品销毁或者退运前，未采取必要措施进行封存并单独存放的； （三）进口乳品进口商将不合格进口乳品擅自调离检验检疫机构指定或者认可的场所的； （四）出口生乳的奶畜养殖场奶畜养殖过程中违规使用农业化学投入品的； （五）出口生乳的奶畜养殖场相关记录不真实或者保存期少于2年的； （六）出口乳品生产经营者未建立追溯制度或者无法保证追溯制度有效性的； （七）出口乳品生产企业未建立样品管理制度，或者保存的样品与实际不符的； （八）出口乳品生产经营者违反本办法关于包装和运输相关规定的。 **第五十三条** 进出口乳品生产经营者、检验检疫机构及其工作人员有其他违法行为的，按照相关法律法规的规定处理。**第六章 附 则** **第五十四条** 进出口乳品进出口商对检验检疫结果有异议的，可以按照《进出口商品复验管理办法》的规定申请复验。 **第五十五条** 饲料用乳品、其他非食用乳品以及以快件、邮寄或者旅客携带方式进出口的乳品，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 **第五十六条** 本办法由国家质检总局负责解释。 **第五十七条** 本办法自2013年5月1日起施行。 |